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7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5구합50351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2. 11.
판 결 선 고	2019. 1. 15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 피고가 2014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149,688,710원, 지방교육세 114,968,870원, 농어촌특별세 57,484,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 중 95%는 피고가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8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149,688,710원, 지방교육세 114,968,870원, 농어촌특별세 57,484,44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9,347,490원, 지방교육세 1,230,390원, 농어촌특별세 568,460원, 가산세 3,891,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나. 판단

1)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(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여부)

가) 이 사건 감면규정은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. 12. 31.까지 취득하는 부동산'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한편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·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8

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(제182조 제1항).

나)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회사는 2012. 10. 11. 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,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·운용하되,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·운용하고, 투자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구 자본시장법 소정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.

그리고 소외 회사가 2012. 10. 19.과 2012. 11. 6. 및 2012. 11. 16.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, 원고는 2012. 10. 19. 위와 같이 납입된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'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'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감면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며, 그 후 2012. 11. 26.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수리되었다.

다)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8

및 비과세 관행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.

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,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부동산 취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.

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,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.

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·설립되어 있었다. 특히 소외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, 등록 요건을 생략한 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만 받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산해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.

2)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(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여부)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부터 제14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8

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3)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